

제품안전 질의응답

# Q & 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제품안전



Q

u  
e  
s  
t  
i  
o  
n

## 건물 외곽을 비추는 조명의 안전인증대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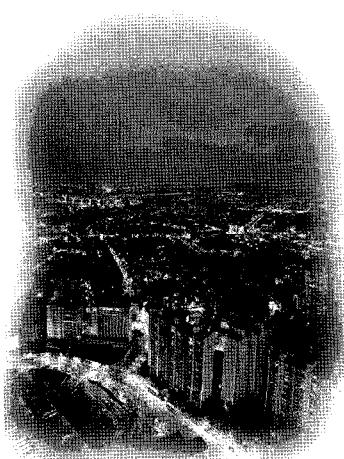
LED경관조명 RGB를 이용한 색연출 효과로 건물 외벽을 비추는 조명제품으로 9W~100W까지 다양하며, 기존 유통되는 전원공급장치에서 전원을 받아(12V OR 24V)구동되는 제품입니다.  
→ 이 제품도 개정된 안전인증 규격에 따라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지?  
→ 법령에서의 '일반조명기구에 한한다'라는 기준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n  
s  
w  
e  
r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교류 50V 이상 1,0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직류 12V 또는 24V로 동작되는 경관조명용 LED조명기구는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LED조명기구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직류전원공급장치(LED용 컨버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명기구는 '실내에서 사용되는 조명기구로서 단일 램프의 램프전력이 150W이하인 램프로 구성된 형광등기구, 백열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기타(방전램프, 반도체소자를 이용한 램프)의 기구'를 말합니다.



**Q**questi  
on**MP3의 안전관리대상 여부**

이 제품은 어떻게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MP3 특징으로는 캐릭터 인형모양의 외관으로 제작되었으며 재질은 플라스틱, 일반섬유로 캐릭터 의상부분 제작되었고 주요 특징으로 볼부분 터치로 플레이, 일부분 터치로 음소거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크기는 10cm 내외로 USB 단자로 충전되며 별도의 충전기는 없습니다.

**A**nsw  
er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서 교류전원 50V 이상 1,0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게서 문의하신 배터리로 동작되는 MP3 플레이어는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MP3 플레이어는 방송통신위원회 KCC 인증관리 대상 품목이므로 KCC 인증 관련 사항은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Tel.1335)로 문의바랍니다.

**Q**questi  
on**전동공구의 수입부품인 스위치에 대한 인증대상 여부**

현재, 국내에서 제조된 전동공구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취득신청 중에 있는데, 제품에 조립된 부품 중 안전인증대상 부품인 Switch가 수입 부품으로 중국의 CQC 및 CE 규격은 취득하였으나, ek마크 및 KS 인증취득이 안되었다고 하여 취득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Switch에 대해 별도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만약 Switch에 대한 취득을 반드시 해야 될 경우, 중국 CQC나 CE성적서 첨부 시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  
er

'전동공구의 부품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스위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완제품에 부품으로 사용할 전기용품(스위치 등)이 국내외에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어 인증된 부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제품생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동 면제방안이 마련되면 공고할 예정입니다.

# Q

uest  
ion

## 기계식 타이머의 안전인증대상 여부

전기제품에 시간이 되면 점점이 ON되어 켜지는 기계식타이머의 부품 안전인증을 취득한 부품을 써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DC모터로 구동하여 220V(10V이하)를 ON하는 스위치가 있는 타이머
- 스프링 타입으로 시간을 경과하게 하여 220V(10A이하)를 ON하는 방식

# A

n  
s  
we  
r

기계식 타이머는 그동안 안전관리 대상품목이 아니었으나 전기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팔, '08년에 법령(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계식 타이머를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2010.1.1 일부터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만 제조 및 수입·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품목입니다. 또한 자연스위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1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세부범위에 해당되어 안전인증 대상품목입니다.

# Q

uest  
ion

## 화장비누 표시방법에 대한 문의

화장비누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고형 뺨래비누가 안전표시대상 '화장비누'에 해당되는지?
2. 화장비누의 경우 순비누분에서 주성분으로 주성분의 기준이 원가기준인지, 중량비율인지?
3. 화장비누의 품질표시를 최소판매단위인 랩포장에 표시사항을 부착해도 되는지? 날개에는 표시를 안 해도 되는지?

# A

n  
s  
we  
r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 차례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의 경우 안전·품질표시대상 '화장비누'는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고체상태) 비누」를 말하므로 고형 '뺨래비누'는 「품공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2) 질의의 경우 화장비누의 표시사항 중 주성분은 화장비누를 구성하는 원료 중 함량(w/w)이 가장 높은 성분을 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3)의 경우 「안전·품질표시 부석서 2」 '화장비누'의 표시기준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식별할 수 있도록 화장비누가 들어 있는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개별제품의 뚜껑포장에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제품의 뚜껑포장에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개별제품별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경우에는 개별제품에도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

Question

**학용품 자율안전마크 표기 문의**

샤프나 지우개 같은 작은 물품에 표시사항과 자율안전마크 등은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마킹펜류에 사인펜, 형광펜 등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화이트보드용 등의 마카류만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Answer

우선 첫 번째 표기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규정된 표시사항은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은 「자율안전 확인 안전기준 부석서 44」 '학용품'을 참조 바랍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신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표면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마킹펜류의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킹펜은 "플라스틱, 유리 또는 금속재질로 된 용기 안에 잉크를 주입시킨 흡수체를 넣고 여기에 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펜촉을 부착하여 화이트보드 등에 글씨를 쓰는 데 사용되는 필기도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용지에 글씨를 쓰는 데 사용하는 싸인펜, 형광펜은 자율안전확인 대상 '마킹펜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